

주주각위

제 47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덕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 우리 회사는 정관 제17조에 의하여 제47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상법542조의4 및 정관 19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19년 03월 27일 (수) 오전 9시

2. 장 소 :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405 4층 대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보고사항 : 감사보고, 영업보고,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나. 부의안건

제1호 의안 : 제 47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

제2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제3호 의안 : 이사선임의 건

3-1호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후보자 이진형)

3-2호 : 사내이사 선임의 건 (후보자 고재영)

제4호 의안 :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제5호 의안 :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

* 별첨 : 안건세부사항

4. 경영참고사항비치

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우리 회사의 본점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시거나,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6. 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%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03월 08일

제이준코스메틱 주식회사

대표이사 판 나 (직인생략)

정관변경(안)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 9 조 (주권의 종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, 오주권, 일십주권, 오십주권, 일백주권, 오백주권, 일천주권,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.</p>	<p>제9조(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	<p>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모든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한 전자등록이 사실상의무화됨에 따라 주권의 종류 삭제 및 관련 근거를 신설</p>
<p>제 10 조의3 (주식매수선택권)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제9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2호의 최대주주(이하 "최대주주"라 함)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④~⑧ 생략</p>	<p>제 10 조의3 (주식매수선택권)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·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, 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, 6호의 최대주주(이하 "최대주주"라 함)와 주요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. 다만,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(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)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. ④~⑧ 생략</p>	<p>관련 규정 해당 조문 일치 반영</p>
<p>제 11 조 (명의개서 대리인) ① ~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부분을 명의개서 대리인의 사무 취급 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, 주권의 발행, 신고의 접수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생략</p>	<p>제 11 조 (명의개서 대리인) ① ~② 생략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전자등록, 주주명부의 관리,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. ④ 생략</p>	<p>-주식등의 전자등록에 따른 주식사무처리 변경내용 반영</p>
<p>제 12 조 (주주 등의 주소,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)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,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.</p>	<p>제 12 조 <삭제></p>	<p>-주식이 전자등록될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주주 등의 제반정보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</p>
<p>제 13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~② 생략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</p>	<p>제 13 조 (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) ① ~② 생략 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,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월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.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폐쇄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.</p>	<p>-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(이하 동일)</p>
<p>제 15 조의 3 <신설></p>	<p>제15조의3(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)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.</p>	<p>-상장회사의 경우 발행하는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에 대하여 사실상 전자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근거 신설</p>
<p>제 16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1조,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제 16 조 (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) 제11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.</p>	<p>- 제12조 삭제에 따른 문구 정비</p>
<p>제 17 조 (소집시기)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제 17 조 (소집시기) ① 생략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 사업 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,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</p>	<p>-기간을 의미하는 경우 개월로 표현을 수정(이하 동일)</p>
<p>제 19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~ ② 생략 ※ 생략 (상법 제542조의4 제2항) ※ 생략 (상법 제542조의4 제3항, 상법의일부규정의시행에관한규칙제6조의4)</p>	<p>제 19 조 (소집통지 및 공고) ① ~ ② 생략 ※ 생략 (상법 제542조의4 제2항) ※ 생략 (상법 제542조의4 제3항, 상법 시행령 제31조).</p>	<p>-</p>
<p>제 29 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 ① 생략</p>	<p>제 29 조 (이사 및 감사의 수) ① 생략</p>	<p>-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으로 인한 결원시 상법상 예외 규</p>

<p>② 생략 ③ <신 설></p>	<p>② 생략 ③ 사외이사의 사임·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제1항에서 정한 이사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.</p>	<p>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문구 조정</p>
<p>제 33 조 (대표이사 등의 선임)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며, 이사 중에서 사장, 부사장 및 전무이사,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.</p>	<p>제33조(대표이사 등의 선임)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.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회장, 부회장, 사장, 부사장, 전무, 상무를 선임할 수 있다.</p>	<p>-</p>
<p>제 37 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 ① 생략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1일전에 문서, 전자문서 또는 구두로써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④ 이사회 의장은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.</p>	<p>제 37 조 (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) ① 생략 ②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- - ③ 이사회를 소집하는 이사는 이사회 회일 1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.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 ④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에서 정한다.</p>	<p>-상법 390조를 반영</p>
<p>제 40 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) ①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되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 ②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.</p>	<p>제40조(이사 및 감사의 보수) 이사 및 감사의 보수(급여, 상여, 퇴직금 등)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,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. ② <삭 제></p>	<p>임원퇴직금지급규정 삭제</p>
<p>제 4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~② 생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(사장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~⑧ 생략</p>	<p>제 43 조 (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·비치 등) ① ~② 생략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~⑧ 생략</p>	<p>-</p>
<p>제 43 조의2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거나, 최근 주주명부 폐쇄일 기존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.</p>	<p>제 43 조의2(외부감사인의 선임)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,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.</p>	<p>-개정 외부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선정권 변경 내용을 반영</p>
<p>부칙 1. 이 정관은 2017년 10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시행한다. -----</p>	<p>부칙 1.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 시행한다. 다만, 제9조, 제11조, 제12조, 제15조의3 및 제16조 개정내용은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-----</p>	<p>-</p>

이사후보자 내역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임 기	주요약력	추천인	신규선임 여부	국 적
사내이사	이진형	1973.07.13	3년	연세대학교 보건대학교 석사과정 前) 제이준코스메틱(주) 대표이사 現) (주)알에프텍 대표이사	이사회	재선임	대한민국

구 분	성 명	생년월일	임 기	주요약력	추천인	신규선임 여부	국 적
사내이사	고재영	1971.12.02	3년	- 경희대학교 경영학사 前) 모거스(주) 대표이사 現) 제이준코스메틱(주) 부사장	이사회	신규선임	대한민국

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액 세부내역

(단위: 천원)

구 분	이 사	감 사
전기한도 승인액	10,000,000	500,000
당기한도 승인액	10,000,000	500,000